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46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문금주·정점식·이병진

주철현 • 위성곤 • 김태호

박대출 • 서일준 • 김기표

민형배 · 김종양 · 박희승

서미화 · 양부남 · 허성무

이종욱 • 서천호 • 조계원

김 현 · 김남근 · 박성민

임미애 • 전진숙 • 서영석

의원(24인)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 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 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해안권을 환태평양 시대를 여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은 남해안권 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남해안권"이란 남해안에 연접한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 남도 관할구역을 말한다.
- 2.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3. "개발지구"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4. "남해안관광진흥지구"란 남해안에 있는 강·섬·갯벌·해안 등 해양자원과 문화·역사유산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 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개발지구를 말한다.

- 5.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란 해양·수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남해안의 강·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지구를 말한다.
- 6. "남해안권발전사업"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남해안권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 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종합계획은 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 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장(이하 "남해안청장"이라 한다)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2. 남해안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4. 환태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 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지털ㆍ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7. 도로・항만・공항・버티포트・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 8. 남해안권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부산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남해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종합계획의 통보) 남해안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종 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버티 포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남해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해 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남해안권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 2.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 3.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4. 남해안권발전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해안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지구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지구 지정요청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 우 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서류 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요청을 할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지구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 ⑨ 개발지구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①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남해안청장은 제9조에 따라 개발지구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①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 제된 것으로 본다.
 - ② 남해안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남해안권발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남해안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남해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남해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남해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남해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사업시행자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 안청장이 지정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남해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1. 남해안권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남해안발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개발지구의 지정목적 및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기간
 - 3. 개발지구를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남해안권발전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6.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7.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 11.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12. 개발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13.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 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 (시·군지역에서 개발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4 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 11.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1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의 수립·변경
- 1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15.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16.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 경
- ⑤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

- 제15조(기초조사) ①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 제9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 제14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 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남해안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남해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 ② 남해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해제·심사·등록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

의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

- 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10.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1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 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5.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1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24.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 2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30.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 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3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3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 3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발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

는 신고

- 3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4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4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4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 43.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 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인가· 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남해안청장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

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 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청장, 관계 시· 도지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9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남해 안권발전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 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 및 조성 토지의 처분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4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남해안권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발전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남해안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 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제2 항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 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 ② 남해안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 (국가의 경우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와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남해안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남해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남해안권발전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 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남해안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남해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 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4장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추진 기구

- 제23조(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남해안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 4. 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 5.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6.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7.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8.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9.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10.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남해안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남해안청장

- 3. 관계 시 · 도지사
-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해안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환경·해양·도시·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남해안발전사업 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 ⑥ 남해안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남해안종합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남해안발전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남해안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 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 전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지원단은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제 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 합개발청(이하 "남해안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남해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③ 남해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④ 남해안청을 설치를 위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 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남해안청의 조직 ·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남해안청장의 업무)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4.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5. 제22조에 따른 준공검사
 - 6.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7.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9. 개발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개발지구 및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11. 개발지구에서의 행위허가
- 12.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 13. 개발지구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4. 개발지구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 15.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사업
- 1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남해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남해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남해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장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8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시

-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리적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 ③ 시·도지사는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 청을 할 때에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남해안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수 있으며,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
- ⑤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 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⑥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가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 제29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해안 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 ②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수 있다.
- ③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6장 남해안 강ㆍ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제30조(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 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리적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 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 ②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해제는 제28조를 준용한 다.
- 제31조(남해안 강·섬관광 활성화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해 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5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수 있다.
 - ②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서 시행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 ③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교통계획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7장 투자촉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 제32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안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투 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남해안청장이 제1항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

- 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 3. 주요 사업내용
- ③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① 남해안청장은 제32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권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

각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촉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홍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홍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35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해양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 2.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반영에 필요한 사항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관광자원의 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의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양·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해양·수산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해양·수산산 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수상레저산업 및 수 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1조(웰니스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2조(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3조(물류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5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발전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 제47조(준용) 개발지구 밖의 지역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과 직접 관련

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45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남해안권발전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지구" 또는 "제1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8장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

-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개발지구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 5. 차입금
 - 6.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금

-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매입 비용
- 2.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 3. 남해안권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5. 제51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 7. 그 밖에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 ③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1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 상할 수 있다.
- 제5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 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9장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한 지원

제55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

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남해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지구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56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7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 치비
 - 3.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 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 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5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 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지구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 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야 한다.

- 제6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 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은 "남해안청장"으로 본다.

- ③ 남해안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남해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 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2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개발지구의 효율적 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 구하고 개발지구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3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 도 불구하고 남해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 제64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5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권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66조(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면제) 국가는 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8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9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허용된 구역은 시· 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한다.

제10장 보칙

- 제7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지정의 제안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1조(감독) ① 남해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 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2조(청문) 남해안청장은 제71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 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남해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청장 또는 관 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한 자

-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남해안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남해안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71조제1항에 따른 남해안청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 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